

일반법을 각각 두면서, 양 부문의 개인정보처리를 모두 감시·감독하고 소송외 분쟁해결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가칭 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와 시책, 기본개념의 정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을 담고, 거기에 통합된 감독기구의 설립근거와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두고, 또 특수한 영역에는 특별법을 두는 것이다.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실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일반법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두 법이 모두 존재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일반법이 두 개 존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의 입법체계를 차용하는 방안인데, 위 둘째의 기본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단일의 법률에 포섭시키는 방안이다. 입법경제적인 관점에서 유용할는지 모르나 다소 기형적인 입법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본 보고자의 판단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두 번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방안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전형적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 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감독기구가 반드시 집행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예방적 기능은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을 사전적·예방적인 차원에서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제적 규정(개인정보처리원칙을 구체화한 처리기관의 의무규정들)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유도하는 기능이다. 감사기능, 자문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자율규제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은 이러한 예방적 기능의 일환이다. 둘째, 사후적인 민원해결기능은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그리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정책조언기능은 국가의 정보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 자문하는 기능이다.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과 예산확보의 측면에서 충분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과 민간의 그 수많은 개별 개인정보처리기관의 모두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기관의 내부에 독립적인 위상과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of Privacy Official)를 두도록 해서 이들을 통합감독기구의 현장감사관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6) 특히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각 영역별로 그

리고 기술발전에 따라 미묘하게 상충하고 있는데,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이 상충하는 가치를 그때그때 조화롭고 융통성 있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율규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을 통한 기술적 규제수단도 최대한 활용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五、四、和會後之經濟發展與社會改革

（一）經濟發展

1. 農業生產

和會後，農業生產迅速恢復，糧食供應充足，農村經濟穩定。

政府採取措施，減輕農民負擔，提高農業生產力。

2. 工業發展

工業生產逐步恢復，工廠重新開工，就業機會增加。

3. 交通建設

交通設施得到修復和建設，物流暢通，經濟交流加強。

4. 社會改革

社會改革深入開展，土地改革完成，社會公平正義得到保障。

5. 教育事業

教育事業得到重視，學校重新開辦，知識青年積極參與建設。

6. 文化藝術

文化藝術事業繁榮發展，民眾積極參與，社會和諧穩定。

노회찬 의원안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안의 비교

수업의 동의를 받은 법안의 문제.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노

정부

	<p>제1조 (목적) 본 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밝힘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꾀하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 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할 것인지?</p> <p>* 개인적 사용목적의 정보 제외 / 업무상 수집하는 개인정보 제외</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단, 사자에 관한 정보는 사망일로부터 10이내의 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제외한다.</p> <p>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3.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처리·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4. "개인정보 보유자"라 함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p> <p>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주체의 상속인을 의미한다.</p> <p>6.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생성·수집·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7.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p> <p>8. "결합"은 하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상의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당해 정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2. "정보주체"라 함은 취급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p> <p>3.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처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p>

개인의 동의가 없게 인출이 가능-무게된 수준의 정보 수집은 ~~NO~~ OK.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의 어떤 양과도 버리지 않게 될 것.
 4차

	<p>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분야별 전문기관 설립 및 지정</p> <p>*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업무의 관장을 누가 할 것인가?(금융정보, 신용정보)</p>		<p>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보주체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사회적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①정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합리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의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7조(추진체계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관장한다. ②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및 <u>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요건, 폐지 또는 지정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효과력과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구체화를 위한 고시 제정, 지침, 가이드라인 제정권</p>	<p>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본 장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지켜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장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시를 제정할 수 있고,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2조(기본이념) ①이 법은 개인정보의 보호가 정보사회의 신뢰를 확립하는 핵심적 토대임을 인식하고 정보주체에게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가운데 공정·투명하고 적법하게 개인정보의 취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전과 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개인정보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는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는 그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p>

Handwritten notes: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
 정부
 2017년 2월 20일

		3. 개인정보는 그 취급에 있어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참여가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p>* 개인 정보 수집 시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알려야 하는 내용</p> <p>* 직접 수집의 원칙</p> <p>* 최소 수집의 원칙의 구체화</p> <p>* 자동 수집장치에 의한 수집</p>	<p>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정보주체에게 제2항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언론, 출판의 목적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수집하는 경우</p> <p>4.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위험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p> <p>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p> <p>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잘 알려야 한다.</p> <p>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p> <p>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p> <p>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p> <p>4. 본 법에 의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p> <p>5.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p> <p>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③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최소의 침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p> <p>④ 누구든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생성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p> <p>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p> <p>⑤ 제4항의 각 호의 1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한 경우에는 사후에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당해 정보주체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p>	<p>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p> <p>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p> <p>3.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p> <p>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누구든지 타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조(자동수집장치에 의한 수집등) ① 누구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동정보수집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때에는 고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자동화된 개인정보수집장치의 활용내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p> <p>** ②개인정보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p> <p>1. 개인정보는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어야 한다.</p>

	<p>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는 알릴 때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p> <p>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개인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해당 상품이나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상품이나 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상품이나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품이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누구든지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②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 <p>②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판매, 유포하는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개인정보의 삭제·파기등)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철회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취급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에 대하여 삭제·파기 및 접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삭제·파기 및 접근차단 등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제9조 (최신성과 완전성) 개인정보는 수집한 최신의 것으로 갱신해야 하며, 이용하기 전에 새롭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 2. 개인정보는 그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p>
	<p>제10조 (접근권과 정정 삭제)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정보</p>	<p>제15조(열람 및 정정청구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p>

<p>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유자는 이 경우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보유자가 법률상 개인정보를 보유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p> <p>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유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유자는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4. 개인정보 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현황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열람이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p>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열람 또는 정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유여부, 열람·정정의 가부를 통보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3. 개인정보는 그 취급에 있어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참여가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p>
<p>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 보유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 보유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p> <p>③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7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2조 (고유식별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공공기관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식별자(이하 고유식별자)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자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처리의 목적이 고유식별자가 부여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p>제19조(고유식별자의 보호)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자(이하 '고유식별자'라 한다)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당해 식별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p> <p>② 공공기관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식별자를 그 개인에 대한 고유식별자로 부여해선 안된다.</p>	
익명권의 보장	<p>제13조 (익명성의 원칙)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금지되지 않는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p>	
아동의 보호	<p>제14조 (아동의 보호) ①누구든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연령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p> <p>③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p>	정보통신망법
사업양수도	<p>제15조 (사업양수도) ①개인정보 보유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등의 사실 2.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p>②개인정보 보유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개인정보 보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4.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과 개인정보의 이전에 반대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p>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영 향 평 가	<p>제93조(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실시) ①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2.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혹은 연동되는 경우 <p>② 제1항의 의무를 지는 개인정보 보유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자가 정보처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유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령·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3.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혹은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p>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루 갖춘 자에게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받은 자는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2.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3.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4.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5.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p>⑥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해 정보처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94조(평가의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향평가의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및 수집되는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된 사항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p>제18조(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비밀로서 분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구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 <p>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결과를 검토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있다.</p>
------------------	---	--

	<p>4. 정보주체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p> <p>5. 사회에 끼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사항</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95조(의견 수렴) ① 위원회 혹은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 혹은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제출된 의견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최종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p> <p>제96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시정 혹은 정보처리의 증진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개인정보 보유자가 제3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4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자가 공무원일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97조(국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효력) ① 각 중앙행정기관은 제93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포함된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때,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에 규정된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지 않은 예산요구를 심의할 수 없다.</p>	
처리 위 탁	<p>제16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유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유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p>	
개인 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등록	<p>제17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2항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정보주 	

	<p>체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p> <p>4.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p> <p>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p> <p>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p> <p>②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2.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7.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람 예정 시기 8.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별로 등록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 1회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상의 중대한 비밀로서 이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유 여부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나 외교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p>	
<p>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정기감사</p>	<p>제18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한 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과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유, 사용, 처리, 보관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교육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현황과 시스템, 개인정보의 속성과 수집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 <p>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직무 수행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p> <p>제19조(정기감사)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p>	<p>제20조(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매 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감사의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수집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p>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결합의 제한</p>	<p>제20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의 제한) 누구든지 개별적인 목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안전보장 · 사회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제21조(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의 정보주체의 보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 정보주체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22조(신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처리 정지 청구</p>	<p>제23조(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청구) ①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이용된다고 판단하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정대리인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1항에 규정된 정보 처리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24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한 조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단,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지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처리정지 청구자에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민노라 공공문 구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p>
	<p>제25조 (손해배상) 본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손해를 가한 자는 고</p>	<p>제21조(입증책임의 전환)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된 때 개인정보취급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p>

	<p>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집 단 소 송</p>	<p>제26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 ① 개인정보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본법에 따라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이하 ■충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p> <p>③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p>	
	<p>제58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본 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p> <p>제5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인의 개인정보보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⑤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p> <p>제6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p> <p>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p> <p>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p> <p>제61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p>	<p>부칙③ (국가인권위원회법)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2조의2(개인정보특별위원회) ①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②개인정보특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인정보특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4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진정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7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중 5급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p>제69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p> <p>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0조 (지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 지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지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1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민간영역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등</p>	<p>제72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의 제정 3.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연구 지원 5.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개인정보보호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8. 국제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기구와의 교류·협력 활동 9. 개인정보보호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10.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11.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시행과 연구 12.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기타 개인정보보호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국가인권위원회법</p> <p>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73조 (국가기관의 협의의무)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규 칙 고시</p>	<p>제74조 (규정의 제정) 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관업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이나 고시를 제정할 수 있다.</p>	
	<p>제75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76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7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p> <p>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p> <p>제78조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개인정보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p> <p>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개인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p> <p>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p>	<p>제23조(자료제출 및 현황 조회) 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취급현황 등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p> <p>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제1항에 의하여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등”은 각각 개인정보취급자로 본다.</p> <p>제24조(방문조사) 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급·보호시설”은 각각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현장으로 본다.</p> <p>*** 국가인권위원회법</p> <p>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p> <p>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p> <p>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p>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개인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9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0조 (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의 활동내용과 개인정보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의 의견제출, 보고서 작성**

제23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급·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급·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

		<p>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위원회의 조사대상	<p>제81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본 법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이하 진정한 사람을 ■진정인■이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진정 중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관련 집단진정에 관하여는 제26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2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2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①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정보주체의 불만 등의 접수·처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p> <p>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개인정보 관련 상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홍보 4. 기타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조(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수행한다.</p> <p>제28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9조(조정)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권"은 각각 개인정보로 "진정"은 각각 신청으로 본다.</p> <p>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1조(조정규칙 등)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 위원회의 조치 권한	<p>제83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하여 조사하기 전에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미리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p>③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국가인권위원회법</p> <p>제42조 (조정) ① 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p>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개인정보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심이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4조 (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83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83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이를 경우에 준용한다.

제85조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조정외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6조 (진정의 각하와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이 허무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2.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③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8조 (결정)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진정인의 진정에 따라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개인정보의 삭제, 수정, 이용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또는 관계기관에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으며, 이 권고는 제7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9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개인정보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

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87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1조 (긴급구제조치)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개인정보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자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2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노회찬 의원안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안의 비교

		노회찬 의원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안
담당 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특별위원회) 산하기구. → 핵심 장점
업 무 범위	법령, 정책, 제도	개인정보 침해에 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관하여
	개인정보 침해	1. 민간,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2. 진정에 의해 또는 <u>직권으로</u> 3. <u>집단진정 가능</u>	1. 민간,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2. 진정이 있는 경우(단, 공공영역은 직권으로도 가능) 3. 집단진정 불가능
결 정 의 효력	법령, 정책, 제도	개선 권고	개선 권고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단 결정 / 손해배상 결정 / 법령, 제도, 정책의 개선권고 결정 / 긴급구제조치 <u>법원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u>	조정(침해행위의 중단, 손해배상)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법원에 이의하지 않아도 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결합의 신고		O	X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		O	X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감사 결과 보고		O	X
개인정보영향평가		O	O

식민적인 감사 기능이 가능하다.

중대 구체적으로 되었다

아무튼 "서로 논의는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캐나다 연방 프라이버시 위원회(13개의 주별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별도로 있음)

Resources

April 1, 2003 to March 31, 2004

	Expenditure Totals (\$)	% of Totals
Privacy Act	4,171,661	37.61 %
PIPEDA	4,768,650	42.99 %
Corporate Services	2,151,980	19.40 %
Total	11,092,291	100.00 %

Note that as of March 2004 there were 95 full time staff positions at 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Detailed Expenditures ⁽¹⁾	Privacy Act	PIPED Act	Corporate Services	Total
Salaries	3,605,276	3,176,545	401,153	7,182,974
Employee Benefits Program	198,097	878,851	160,870	1,237,818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108,074	93,266	238,789	440,129
Information	70,366	80,773	76,088	227,227
Professional Services	191,986	385,886	588,181	1,166,053
Rentals	16,328	-	82,277	98,605
Repairs & Maintenance	-	-	291,026	291,026
Materials & Supplies	8,613	3,330	82,454	95,397
Acquisition of Machinery & Equipment	-	150,000	230,985	380,985
Other Subsidies & Payments	(27,079)	-	156	(26,923)
Total	\$4,171,661	\$4,768,651	\$2,151,979	\$11,092,291

(1)

Total expenditure figures are consistent with the public accounts.

프랑스의 CNIL

매일 300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고, 매월 8000건의 전화 문의와 매년 4000여건의 진정이나 의견요청이 처리된다고 함. www.cnil.fr

2003년의 경우(2003년 연례 보고서)

6,136 건의 진정과 의견요청(3,567건의 진정과 기타 의견요청).
31건의 감사.

65,921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처리 등록

1978년부터 941,076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처리 등록.

24회의 Plenary session : 68 의견 채택(9 형사고발, 5 경고 포함)

웹사이트에 매일 3,000 방문, 매월 뉴스레터 6,500 명 가입.

CNIL은 220회의 행사에 참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

윤 현 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I. 들어가며

2004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은 수년간에 걸쳐 사회인권단체들과 함께 연구해온 결과를 바탕으로³⁶⁾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입법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것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남용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여 권리구제의 방법을 현실화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여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술이나 설비의 도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유출과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을 차단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목적의식에서 준비되고 발의된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의 결과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발의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국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한 입법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따라서 그 성격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노회찬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였으나, 영뚱하게도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고 말았다. 더구나 이 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조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4년 중순에 확정하기로 했던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이 계속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가 바뀐 지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안이 그 윤곽을 드러냈고, 조만간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는 올 초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이고 완결된 법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새롭게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갖추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사회단체, 정당, 정부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간의 논의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부분 역시 과연 어떠한 제도를 두어

3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동을 해왔던 7개 사회인권단체들은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민주노동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연구하고 준비했다.

야 개인정보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물론 다양한 논의와 각각의 입장에 따라 개별 법률안에서 규정되는 조치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법률체계가 미처 담보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침해사례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예측하지 못한 장래의 개인정보침해를 대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민주노동당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도록 한다.³⁷⁾

II.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법안 제정을 통해서
"자기정보통제권이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1.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

자기정보통제권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특히 강조되는 정보인권의 축이다. OECD는 1980년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가지의 원칙을 설정했으며,³⁸⁾ 이 가운데 하나로 "개인 참여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을 천명하고 있다. OECD는 이 원칙에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에 의하여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에 개인은 그 이유를 구하고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의 파기, 정정, 보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한편, OECD 가이드라인은 "수집제한의 원칙"을 두어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를 필요로 함을 천명하고 있다.

즉, 자기정보통제권은 개인정보의 유통이나 보관 활용 등의 행위에 있어서 정보주체 본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내용으로서는 동의권, 동의철회권,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삭제·반환·폐기 청구권 등이 있다.

37) 개인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그러한 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를 통해 현실화된다.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이를 위해 독립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38) OECD 가이드라인의 8대 원칙은 ①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③ 목적명확성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⑤ 안전조치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⑦ 개인참여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진짜에 법안이 자료를 방위하리 있었으면 '연예인 X파일'

2.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의 방법

정보의 유통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며 그 규모가 대량화되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행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고 유통된 개인정보는 자신의 관할 범위를 넘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조차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자기정보통제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입법안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1) 동의권

-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등)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언론·출판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4.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위험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생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한 경우에는 사후에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당해 정보주체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는 알릴 때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2) 동의 철회권

제10조(동의의 철회)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자가 법률상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열람, 삭제, 반환, 폐기 청구권

제11조(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4. 개인정보 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현황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정보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료 또는 정정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유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고유식별자의 보호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동시에, 만인부동성·종생불변성을 갖춘 고유한 식별번호를 출생시에 부여하여 죽는 날까지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13자리로 이루어진 이 주민등록번호는 조합방법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번호만으로 상당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으며, 공공·민간을 망라한 사회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세계적으로도 전 국민에게 이처럼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며, 설령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범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례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관되어 발생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무차별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그 형태를 달리하거나 사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식별번호의 사

양자간 사례
[한겨레] 1.20

용을 제한하는 조문을 두게 되었다.

제15조(고유식별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식별자(이하 “고유식별자”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공공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자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처리의 목적이 고유식별자가 부여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공공기관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부여한 고유식별자를 그 개인에 대한 고유식별자로 부여할 수 없다.

IV. 사전조치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사례를 억제하기 보다는 사후에 피해구제차원의 개인정보보호에 치중한 법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공공 민간 공히 마찬가지 현상인데, 그 결과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질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후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확립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를 미연에 막고, 피해발생의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하였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감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0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정보주체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2)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 결합제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는 일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기가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수 없다.

1.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 - *감정하게 생성하게 됨*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에 위원회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제95조(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실시) ①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2.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또는 연동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보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자가 정보처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2항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령·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3.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2.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3.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4.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5.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영향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처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V. 사후조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사후조치로서 피해자 구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피해자 구제는 금전적 손실로 환산될 수 있는 직접적 피해의 원상복구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피해를 계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비록 환산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매우 경미한 수준의 개별적 보상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명예훼손 등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측면의 손해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경우이므로 논의의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이 규정된다면, 이것은 사후조치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가해행위의 의도를 억제하게 되어 일정한 사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특히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제29조(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 ①개인정보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들(이하 "공동피해자"라 한다)을 위하여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운다.

VI.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

이상에서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문들을 예로 들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비단 이상에 열거한 예들을 정형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정보주체 본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전조치로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강력한 사후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정보주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의 법제도적 장치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제도의 현실은 정보사회의 비약적 발달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침해의 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그 결과 피해의 감수를 고스란히 정

보주체가 책임져야하는 부당한 현상을 발생시킨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준비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역할을 정부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제대로 세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구제 조치를 현행 수준 이상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과거 수년 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들의 이해관계가 국민의 정보인권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지난 1월 17일, 인터넷 망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된 소위 “연예인 X-파일” 사건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열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전적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법제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법제를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고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개인정보의 침해가 일어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것임이 분명하다.

모쪼록 이후 진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논의에서는 정부부처의 밥그릇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또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제도 마련이라는 대의가 전제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이름도 유치한 “연예인 X-파일” 같은 개인정보침해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 총상태

통합기본법 지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해서 인노부문을 크게 대우해서야 한다는 주장을 듣지 않는다.
실용적인 정보인권침해는 민간부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침해주체가 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경제논리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인권침해를 계속해서 묵과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프리미엄이 없는 비용이 아닌 특자다" - 도이치 연방.

* 징역형

RFID칩
(2005년부터 특정과 주라수를 반출하는 여권을
발급이 반행하고 있다.)

시제적으로 개인정보의 유가가 낮아질수록 침해되고 있다. 거의 개인정보의 사망선이라고 볼 수 있다.
9.11 이후

공공부문의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이 더 양질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유형이다.
현재의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권과 주체가 신속하게 될 수 있다.

조사·영리권을 가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독기구는 (독립적)

* 접근성

기법법을 성립시키는 데 중요하다. 독립기구 설립, 주라로 집중. 정보수집 범위 축소.
시비사회의 문화개선이 필요하다.

* 이윤·윤리성

이윤을 조장함으로써
'민방행법에 대한 특별법 형태를 되어 준다. 급격한 변화를 통한 환경을 줄일 수 있다.'